

장:(1000) 일반행정비

관:(1200) 일반행정비

항:(1290) 재무행정

세항:(1294) 회계관리

세세항:(110) 인건비

[회계과] 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1000	일반행정비	95,096,778	94,689,062	407,716	
1200	일반행정비	95,096,778	94,689,062	407,716	
1290	재무행정	95,096,778	94,689,062	407,716	
1294	회계관리	94,242,203	94,067,135	175,068	
100	경상예산	91,301,840	91,126,772	175,068	
110	인건비	75,349,130	75,473,395	△ 124,265	
	101 인건비	75,349,130	75,473,395	△ 124,265	
		7,363,133	7,311,395	51,738	02 수당 ◎정액수당 51,738 ●초과근무수당 23,215 - 5급 경정(9,622원X33명X25시간X12월)-기정(9,471원X33명X25시간X12월) = 1,495 - 6급 경정(8,165원X139명X25시간X12월)-기정(8,036원X139명X25시간X12월) = 5,380 - 7급 경정(7,325원X220명X25시간X12월)-기정(7,210원X220명X25시간X12월) = 7,590 - 8급 경정(6,564원X148명X25시간X12월)-기정(6,461원X148명X25시간X12월) = 4,574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- 9급 경정(5,887원X18명X25시간X12월)-기정(5,794원X18명X25시간X12월) = 503
					- 지도관 경정(9,434원X1명X25시간X12월)-기정(9,285원X1명X25시간X12월) = 45
					- 지도사 경정(7,663원X3명X25시간X12월)-기정(7,542원X3명X25시간X12월) = 109
					- 지도사 경정(7,148원X5명X25시간X12월)-기정(7,036원X5명X25시간X12월) = 168
					- 기능6급 경정(8,165원X4명X25시간X12월)-기정(8,036원X4명X25시간X12월) = 155
					- 기능7급 경정(7,325원X13명X25시간X12월)-기정(7,210원X13명X25시간X12월) = 449
					- 기능8급 경정(6,564원X22명X25시간X12월)-기정(6,461원X22명X25시간X12월) = 680
					- 기능9급 경정(5,887원X37명X25시간X12월)-기정(5,794원X37명X25시간X12월) = 1,033
					- 기능10급 경정(5,326원X41명X25시간X12월)-기정(5,242원X41명X25시간X12월) = 1,034
					●현업부서(도로과 공동구외 4개부서) 28,523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- 초과근무(총무과) 355
					· 별정6급 경정(8,165원X1명X3시간X249일)-기정(8,036원X1명X3시간X249일) = 97
					· 행정7급 경정(7,325원X2명X3시간X249일)-기정(7,210원X2명X3시간X249일) = 172
					· 기능7급 경정(7,325원X1명X3시간X249일)-기정(7,210원X1명X3시간X249일) = 86
					- 초과근무(공보실) 4,393
					· 기능6급 경정(8,165원X1명X3시간X249일)-기정(8,036원X1명X3시간X249일) = 97
					· 기능7급 경정(7,325원X1명X3시간X249일)-기정(7,210원X1명X3시간X249일) = 86
					· 기능8급 경정(6,564원X3명X3시간X249일)-기정(6,461원X3명X3시간X249일) = 231
					· 기능10급 5,326원X1명X3시간X249일 = 3,979
					- 초과근무(회계과) 337
					· 기능6급 경정(8,165원X1명X3시간X249일)-기정(8,036원X1명X3시간X249일) = 97
					· 기능7급 경정(7,325원X1명X3시간X249일)-기정(7,210원X1명X3시간X249일) = 86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・ 기능8급 경정(6,564원X2명X3시간X249일)-기정(6,461원X2명X3시간X249일) = 154 - 초과근무(문화예술과) 77 ・ 기능8급 경정(6,564원X1명X3시간X249일)-기정(6,461원X1명X3시간X249일) = 77 - 초과근무(도로과) 1,403 ・ 기능6급 경정(8,165원X1명X8시간X249일)-기정(8,036원X1명X8시간X249일) = 257 ・ 기능7급 경정(7,325원X5명X8시간X249일)-기정(7,210원X5명X8시간X249일) = 1,146 - 야간근무(도로과) 456 ・ 기능7급 경정(2,442원X4명X8시간X365일)-기정(2,403원X4명X8시간X365일) = 456 - 초과근무(농산지원과) 21,502 ・ 농업6급 8,165원X1명X3시간X249일 = 6,100 ・ 농업8급 6,564원X1명X3시간X249일 = 4,904 ・ 기능6급 8,165원X1명X3시간X249일 = 6,100 ・ 기능9급 5,887원X1명X3시간X249일 = 4,398
		3,175,277	3,251,113	△75,836	08 기타직보수 ◎청원경찰 △75,836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정액수당 △75,836 - 초과근무수당 △75,836 · 일반부서 경정(6,230원X44명X25시간X12월)-기정(6,132원X26명X15시간X12월) = 53,539 · 현업부서(초과근무) 경정(6,230원X6명X3시간X249일)-기정(6,132원X24명X3시간X249일) = △82,012 · 현업부서(야간근무) 경정(2,077원X4명X8시간X365일)-기정(2,044원X12명X8시간X365일) = △47,363
		347,839	448,006	△ 100,167	09 일용인부임 ◎일용인부 국민건강보험(본청) 경정(4,000,000,000원X23.85/1000)-기정(5,572,191,000원X22.4/1000) = △29,418 ◎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(본청) 경정(4,000,000,000원X45/1000)-기정(5,572,191,000원X45/1000) = △70,749
120	경상적경비	15,952,710	15,653,377	299,333	
	201 일반운영비	1,247,213	1,268,685	△21,472	
		1,247,213	1,268,685	△21,472	01 일반운영비 ◎부서운영기본경비 △2,160 ●일반수용비 경정(50,000원X40명X12월X95/100)-기정(50,000원X40명X12월) = △1,2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●급량비 경정(40,000원X40명X12월X95/100)-기정(40,000원X40명X12월) = △960 ◎자동제어 시설유지비 경정(0원)-기정(19,312,000원) = △19,312
	204 직무수행경비	4,831,780	4,701,780	130,000	
		3,419,980	3,289,980	130,000	02 직급보조비 ◎일반직,기능직 경정(3,315,400,000원)-기정(3,185,400,000원) = 130,000
	304 연금부담금	9,472,992	9,282,187	190,805	
		2,077,812	1,887,007	190,805	02 국민건강보험금 ◎일반직·기능직·기타직 경정(79,570,311,000원X23.85/1000)-기정(79,570,311,000원X22.4/1000) = 115,377 ◎시립예술단 경정(4,671,050,000원X23.85/1000)-기정(4,671,050,000원X22.4/1000) = 6,774 ◎2006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기관부담금 68,654,000원X1식 = 68,654
1295	재산관리	854,575	621,927	232,648	
100	경상예산	609,375	370,687	238,688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120 경상적경비	609,375	370,687	238,688	
	201 일반운영비	609,375	370,687	238,688	
		609,375	370,687	238,688	01 일반운영비 ◎배상공제 66,188 ●영조물배상(건물,도로,공원,주차장 등) 경정(216,188,000원)-기정(150,000,000원) = 66,188 ◎미분양 용지 및 국·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경정(220,000,000원)-기정(60,000,000원) = 160,000 ◎중동1117번지(구 펄펄골프장) EGI웬스 임대료 12,500,000원X1식 = 12,500
	200 사업예산	235,200	241,240	△6,040	
	210 보조사업	110,990	160,240	△49,250	
	201 일반운영비	89,390	126,640	△37,250	
		89,390	126,640	△37,250	01 일반운영비 ◎국·공유재산관리 수용비 경정(74,390,000원)-기정(111,640,000원) = △37,250 (도)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74,390 - 111,640 = △37,250
	202 여비	21,600	33,600	△12,000	
		21,600	33,600	△12,000	01 국내여비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국·공유재산관리 업무연찬회 경정(0원)-기정(12,000,000원) = △12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도) 0 - 12,000 = △12,000
	220 자체사업	124,210	81,000	43,210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24,210	81,000	△56,790	
		24,210	81,000	△56,790	01 시설비 ◎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△71,000 ●설계용역비 경정(0원)-기정(71,000,000원) = △71,000 ◎소사본3동 청사부지 정비 14,210 ●수벽(사철나무) 설치 143,000원X70m = 10,010 ●웬스설치 60,000원X70m = 4,200
	405 자산취득비	100,000	0	100,000	
		100,000	0	100,000	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◎중형승합차(30인승) 교체 구입 100,000,000원X1대 = 100,000
	5000 지원및기타경비	3,789,926	754,250	3,035,676	
	5200 제지출금	3,035,676	0	3,035,676	
	5210 제지출금	3,035,676	0	3,035,676	

장:(5000) 지원및기타

관:(5200) 제지출금

항:(5210) 제지출금

세항:(5211) 제지출금

세세항:(420) 기타

[회계과] 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5211	제지출금	3,035,676	0	3,035,676	
400	예비비등	3,035,676	0	3,035,676	
420	기타	3,035,676	0	3,035,676	
	802 반환금기타	3,035,676	0	3,035,676	
		1,852,458	0	1,852,458	01 국고보조금반환금
					◎성과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 = 9,323
					◎춘의청소년 수련관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= 36,838
					◎원미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= 17,329
					◎기초생활보장급여 = 402,583
					◎자활근로사업비 = 101,721
					◎가사간병도우미사업(복권기금) = 19,719
					◎장애수당 = 26
					◎장애인 자녀교육비 = 1,379
					◎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 = 511
					◎장애인 생활시설 급여 = 2,232
					◎입양아동 양육보조금 = 421
					◎아동복지 시설급여비 = 194
					◎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= 27,481
					◎보육교사 보수교육비 = 1,160
					◎국공립보육시설 신축(소사주공) = 5,094
					◎경로연금 = 24,538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노인일자리 창출사업 = 401
					◎노인복지시설 급여 = 9,553
					◎부천시니어클럽사업개발비 = 5
					◎여성폭력중사자교육 = 23
					◎여성복지시설급여 = 6,695
					◎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,회복프로그램 운영(복권기금사업) = 245
					◎가정폭력행위자 교정,치료프로그램 운영(복권기금사업) = 2,020
					◎가정,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사업비(복권기금사업) = 175
					◎저소득모,부자가정지원(국비) = 32,990
					◎생활체육교실 운영 = 554
					◎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= 568
					◎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= 781
					◎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= 13,429
					◎청소년수련관 = 5,239
					◎양곡관리 제경비 = 1
					◎FTA과원폐원 지원사업 = 48,617
					◎예방접종시술비 = 115
					◎학교우유 급식지원 = 49,300
					◎새해 영농 설계교육 = 100
					◎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= 765
					◎쌀소득 보전직불제 = 47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산불방지 = 1,774 ◎산림병해충방제 = 242 ◎조림사업 = 696 ◎숲가꾸기사업 = 1,416 ◎교육훈련 강사수당 = 1,990 ◎통,리대장 교육비 = 39 ◎중앙교육입교자 여비 = 49 ◎방독면 보급 = 445 ◎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교체 = 3,926 ◎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(운행차) = 927,505 ◎저공해자동차 보급 = 56,000 ◎평생학습 성인문해교육사업 이자수입 = 35 ◎고용촉진훈련 사업비 = 12,637 ◎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 = 613 ◎긴급복지 지원사업 = 22,496
		1,183,218	0	1,183,218	02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 ◎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= 27,333 ◎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= 5 ◎도~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 = 3,351 ◎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= 187 ◎지방세수증대활동비 = 39 ◎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= 44 ◎원미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= 4,332

장:(5000) 지원및기타

관:(5200) 제지출금

항:(5210) 제지출금

세항:(5211) 제지출금

세세항:(420) 기타

[회계과] 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= 3,000
					◎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산업육성 = 26
					◎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= 293
					◎제6회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축제참가 지원 = 4
					◎기초생활보장 급여(생계,주거,교육) = 50,323
					◎자활근로사업비 = 12,719
					◎차상위계층 출산비 = 3,300
					◎비수급빈곤층한시적생계구호 = 113,282
					◎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 = 1,050
					◎저소득층 연탄구입비 = 1,728
					◎저소득층 연탄운반비 = 731
					◎자활근로사업추진(도비사업) = 2,797
					◎자활후견기관중사자복지수당 = 1,126
					◎저소득장애인신문무료보급 = 186
					◎장애수당 = 6
					◎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 = 6,215
					◎도비장애수당 = 5,593
					◎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= 45
					◎저소득중증장애인의료재활사업 = 652
					◎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= 1,072
					◎청각언어장애인용화상전화기설치 = 824
					◎장애인생활시설운영 = 678
					◎장애인생활시설급여 = 279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수당 = 12,250
					◎개인운영복지시설운영비지원 = 4,106
					◎복지시설지원4종 = 8,036
					◎장애인최적관람설치 = 7,604
					◎저소득중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= 241
					◎복지시설운영지원7종 = 3,771
					◎소규모 아동학대 예방센터지원 = 1,499
					◎아동전문 치료실(심리치료) = 2,730
					◎저소득층아동 특기교육(영어) = 8,000
					◎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(튜터) = 17,900
					◎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= 61,268
					◎꿈나무아동복지관 운영비 지원 = 14,413
					◎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= 2,439
					◎아동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 = 750
					◎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= 5,050
					◎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= 5,000
					◎시설아동 자립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 = 426
					◎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 = 1,596
					◎입양아동양육보조금 = 91
					◎아동복지시설 급여비 = 26
					◎공휴일 아동급식(교육비특별회계) = 2
					◎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= 13,741
					◎보육교사 보수교육비 = 58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국공립보육시설 신축(소사주공) = 2,547
					◎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= 8,750
					◎방과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 = 1,000
					◎장애아반 특수근무수당 = 9,250
					◎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= 150
					◎정부지원보육시설교재교구비 = 2,400
					◎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처우개선비 = 6,140
					◎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복리후생비 = 3,045
					◎보육시설장 전문교육 = 420
					◎경로연금 = 5,302
					◎노인교통비 = 21,306
					◎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월동난방비지원 = 4,026
					◎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 = 257
					◎노인일자리 창출사업 = 200
					◎주간보호신규시설 운영지원 = 314
					◎노인복지시설급여 = 1,195
					◎전문요양시설 운영비(이양) = 10,673
					◎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 = 41
					◎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(이양) = 6,274
					◎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= 15,597
					◎경기가정도우미 활동비 = 869
					◎부천시니어클럽사업개발비 = 3
					◎노인건강진단(이양) = 175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여성폭력중사자 교육 = 12
					◎여성복지시설급여 = 838
					◎가정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= 50
					◎모자복지시설지원 = 742
					◎저소득모,부자가정지원(도비) = 13,063
					◎청소년 순회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= 14
					◎생활체육교실 운영 = 647
					◎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= 284
					◎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= 1,000
					◎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금 = 1,501
					◎제14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대회 = 468
					◎청소년공부방 운영(도비) = 3,687
					◎청소년수련관 건립 = 8,732
					◎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= 86,575
					◎자전거도로 설치사업 = 5,474
					◎영세농업인 고등학생 학비보조 = 1,035
					◎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= 113
					◎학교우유 급식지원 = 10,564
					◎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= 1
					◎친환경농업인증 검사비 지원 = 276
					◎산불방지 = 1,313
					◎산림병해충방제 = 37
					◎조림사업 = 209

장:(5000) 지원및기타

관:(5200) 제지출금

항:(5210) 제지출금

세항:(5211) 제지출금

세세항:(420) 기타

[회계과] 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숲가꾸기사업 = 464
					◎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 = 2,100
					◎학교숲조성 = 38,427
					◎교육훈련 강사수당 = 1,659
					◎통,리대장 교육비 = 84
					◎중앙교육입교자 여비 = 54
					◎방독면 보급 = 341
					◎민방위시범마을 = 66
					◎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= 16
					◎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교체 = 1,963
					◎수도권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= 20,591
					◎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(운행차) = 463,753
					◎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 = 1,580
					◎긴급복지 지원사업 = 2,812

장:(5000) 지원및기타

관:(5200) 제지출금

항:(5210) 제지출금

세항:(5211) 제지출금

세세항:(420) 기타

[회계과] 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부 서 합 계		98,886,704	95,443,312	3,443,392	